

제335회 임시회
2014. 10. 24.(금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「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4. 10. 24.(금)
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윤은희 의원 외 6명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0월 15일

-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은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규제로 심의·의결된 사업주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이 조례 적용대상 사업주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 조항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규제로 심의·의결된 사업주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윤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0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10월 2일

발 의 자 : 윤은희, 임희무, 엄재창
김영주, 연철흙, 최광옥
박한범

1. 개정이유

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규제로 심의·의결된 사업주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이 조례 적용대상 사업주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의무 조항 삭제
(안 제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관련부서 협의 : 안전행정국 회계과와 협의함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생략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사업주의 책무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 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(이하 “내역서” 라 한다)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내역서에는 명단, 연락처, 주소,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사업주의 책무) 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삭제)</u></p> <p>③ <u>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(이하 “내역서” 라 한다)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내역서에는 명단, 연락처, 주소,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제3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관련법령 발취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